

September 23, 2013

헌재, 산업기술보호법 핵심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2011헌바39)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중 일부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과 함께 영업비밀 또는 중요기술의 불법유출을 처벌하는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법인 만큼, 이번 위헌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문제된 법률의 내용, 위헌결정의 이유, 진행중인 소송에서의 대처방안 및 향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된 법률의 내용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자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인 미국 경제스파이처벌법(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1839, 1996년 제정) 등을 참고하여 2006년 제정되었고,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변경, 산업기술유출행위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호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이번에 위헌결정된 법률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중 동법 제14조 제1호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의 형사처벌규정 중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개념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보면, “- 전기전자분야: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등, - 자동차 분야: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 조선분야: 고부가가치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된 특정 자료가 위와 같은 조립·검사·설계기술과 관련성만 있으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계나 학계 등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충분한

기술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대상기관(피해회사)이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연구개발한 기술이거나 외부 협력업체가 자신의 기술을 대상기관을 위하여 편집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이 되는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자원부 고시에 첨단기술의 일종으로 “드릴쉽(Drill ship)”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드릴쉽 설계기술이나 건조기술 등 드릴쉽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2. 위헌결정의 이유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행위의 객체인 “산업기술”의 개념에 대하여, (i)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ii)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i) 이 개념 규정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진행중인 소송에서의 대처방법 및 향후 파급효과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결정 이전에 당해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만일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실무상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헌결정 사실을 알리거나 재판부가 위헌결정을 알게 되면,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적법한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되기 위한 해당 기술의 영업비밀성(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유지노력)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위헌결정 사실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이 위헌결정을 알게되면 수사를 중단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적용법조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으로 전환하여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2011. 7. 25. 법률 제10962호) 제36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규정 역시 위헌판결이 된 구 산업기술보호법 규정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현행 규정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위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처벌에 관한 규정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합헌성 유무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겨 놓게 되었고, 당분간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많은 실무상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호 변호사	TEL. 02 316 4027	E-Mail. sholee@shinkim.com
● 홍탁균 변호사	TEL. 02 316 4085	E-Mail. tkhong@shinkim.com
● 김우균 변호사	TEL. 02 316 4083	E-Mail. wgkim@shinkim.com